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31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0구합1781 압류처분취소

원 고 A

피 고 [redacted]시 [redacted]청장

변 론 종 결 2021. 6. 10.

판 결 선 고 2021. 7. 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05. 6. 24. 원고 소유의 [redacted]시 [redacted]구 B 답 1㎡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31

가. 원고는 1996년 6월경부터 2000년 6월경까지 매년 부과받은 C 1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다.

나. 피고는 체납된 위 자동차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. 6. 24. 원고 소유의 [redacted]시 [redacted]구 B 답 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압류하였고(이하, '이 사건 압류처분'이라 한다), 위 압류처분에 따라 [redacted]법원 동수원등기소 2005. 6. 27. 접수 제76985호로 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가. 본안전항변의 요지

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,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원고의 지방세 체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. 6. 24.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5. 10. 13.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여 D 주식회사에 급여압류통지를 하였던 점, ② 구 지방세법(2005. 12. 31. 법률 제78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고, 구 국세징수법(2007. 12. 31.법률 제88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) 제45조 제1항, 제4항,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1-08-31

는 한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, ③ 압류통지에 관한 자료의 보존기간 또는 우체국의 등기발송정보 조회가능기간 등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피고에게 그 송달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(대법원 2008. 1. 31. 선고 2007두24203 판결 참조), 송달자료가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거나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졌을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.

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봄이 타당한 위 2005. 6. 27.경으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. 12. 9. 제기되었는바,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